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61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면서, 소상공인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운용,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과당경쟁 완화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규정하는 등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법률로 체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률 제명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6개 장, 26개 조문으로 체계화
- 나.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하고, 동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지역별 시행계획에 한함)가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안 제5조)

다. 소상공인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및 현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두어 운용함(안 제6조)

라. 현행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함(안 제7조)

마.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거나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구조개선 등을 위해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소상공인의 성공적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차. 단체의 대표가 소상공인이고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 카. 정부가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 타. 정부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등의 정보제공, 유망 사업 발굴 및 보급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파.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재창업 지원,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유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2-481-4576, Fax : 042-472-695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제5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등 영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7. 그 밖에 제도개선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소상공인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역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정책위원회 등) ① 소상공인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 및 현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항
4.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5. 불합리한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고 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소상공인단체의 장,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실적·사업 전환 현황 등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소상공인의 육성

제8조(창업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거나 자금, 인력, 판로, 입지 등 소상공인 창업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

제10조(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상권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성공적 입지 및 업종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상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①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조사·개발 및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2.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소상공인 창업·구조고도화와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 상호간 협업화·조직화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신사업 모델의 발굴과 보급
10. 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등 공동사업
12. 시장등의 상인 자조조직 육성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4.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진흥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공단이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진흥공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진흥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2. 소상공인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6. 교육,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창업(해외창업을 포함한다) 및 경영안정 지원
 7. 신사업 모델의 개발·보급 등 정보제공 지원
 8.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9.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연구
 10. 소상공인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12.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제고에 관한 사항
 13.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상공인연합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사업
2. 소상공인 창업·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소상공인 구매·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제22조(사업영역 보호) 정부는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과당경쟁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등의 정보제공, 유망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전환 유도, 해외창업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유도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 등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 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공단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6 장 벌칙

제26조(과태료) ①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본다.

제3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7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둔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제5조(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2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

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

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